

기안용지 인원서류

분류기호 문서번호	상정1316	(연좌번호) 6714	권결규격 과장	정기 결사	조1 항
처리기간	0467	시	장		
시행일자		중			
보존년한					

보조기관	상정과장	법무부장관	법무부장관
	상정계장		
기안책임자	유갑선 (이기용 99 7. 19)	법무부장관	법무부장관

경우	시내종로구 낙원동 132-2	발신	1979. 7. 19
수신	취영 하 외 6명	신	
제목	질기서 회시		

1. 귀하등이 질기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시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음

가. 건물의 건축허가는 대지소유자 전원 또는 이웃나, 1인의 명의로도 무위 가능 하사 그 분나 건축후의 건축소유자중 부담분에 대한 전의, 대지이용대차 및 대차등의 법률문제를 고려하여 신중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나. 법인은 대지소유자와 시장건물의 공유등과는 관계없이 인정 할수 있으며

다. 시장법 제4조 2항의 법인은 시장개설

허가시의 요건이므로 개설허가시 제반사항을 검토 허가여부를 결정 하듯 사항이므로 양지 하시기 바라며 허가재방인의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에 의하여

귀하등이 처리방법을 기구하시기 바랍니다. ㄷ

부 권 직

경유 : 서민과장

수신 : 상정과장

79. 7. 12.

제목 : 직장별 관 계사항에 대한 집의이송



본 집의서를 주관과인 귀과로 이송하니 처리하시
되 법무담당관의 법무검사를 받아 시행 하시길 바랍니다.

끝.

2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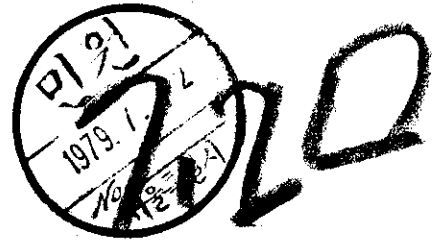
99712

지방행정사무관

김 현 중

법 무 담 당 관

수신 서울특별시장
 참조 법무과장
 제목 시장법 관계사항에 대한 질의



1. 법률 제 704호(1961. 8. 31.) 공포 시행된 시장법 제3조(기설자)

제2항에는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 각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에게 기설자로서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바,

가. 서울특별시장으로 부너 시장예정지로 착경되고 시장시설

승인을 받은 지역으로써, 동지역의 특수성은 다지(197필지)의

소유자가 다수인(약70명)이며 시장건물의 건축소요자금을 다수인

전원으로 부너 소유평수에 따라 거출한후 신축을 하고자 할바,

건축허가 신청서에 기재하는 신청인의 명의가 위2항에 의한

법인이어야 하는지, 또는 다수인 전원(100%의 0명)으로도 가능

한지의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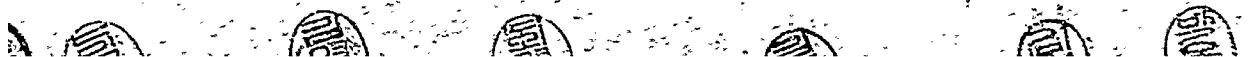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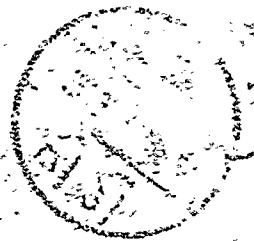
나. 시장기설허가를 득하기 위하여 법인을 구성함에 있어 어떤

다지 소유자 다수인(약70명)전원의 동의를 득함이 없이 다수인

중의 일부 인사(19명)만 조합하여 임의로 발기인이 되고,

그 발기인중 "가"라 칭하는 자(이하 "가"라 함)가 발기인 전원의

수	1970. 7/12	일
수	계	중
주	무	과
정	장	
지	원	



동의 없이 13명을 원시 주주 및 이사로 여위 조관 하는 한편
 "가"가 설립법인의 대표 이사로 자의에 의해 취임등기 하였고
 "가"는 설립 자본금 전액을 혼자 불입하고 등기 완료후 즉시 유익금
 전액을 인출 하였으며 "가"는 물론 원시주주 전원의 주식지분 및 유익
 주금 불입을 현재까지 한 사실이 없고 더욱이 법인 설립목적
 (등기부상에 표시된) 이 성취 필수품 판매업 및 부대사업업으로 되어
 있는바, 위에서 말한 법인이 기성자로서의 법인으로 간주 할수
 있는지의 여부,

다. 이사회 법인의 대표 이사 "가"가 다수인종의 일부인에 의하여 사유
 재산인 자기 및 건물(유치시장비, 소조)을 역사법인에게 출자하고
 대표로 역사법인의 주식을 상당액 인수 하라고 강요하고 있는바,
 (이는 역사법인이 설립당초부터 다수인을 기만하고 위장설립된것을
 추후에 합법화 시키려는 수단인것임)
 역사법인에게는 사실상 아무런 재산이 없는바, 이러한 경우
 제2항에 해당되는 법인으로 간주 할수 있는지의 여부.

끝.

지 의 각

주 소	지	의	각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원동 132-2	제	의	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송인동 211-21	부	의	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응암동 419-9	제	의	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5동 411-1	기	의	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1-529	기	의	가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54-76	기	의	가
서울특별시 필동 3가 28-5	의	의	가

